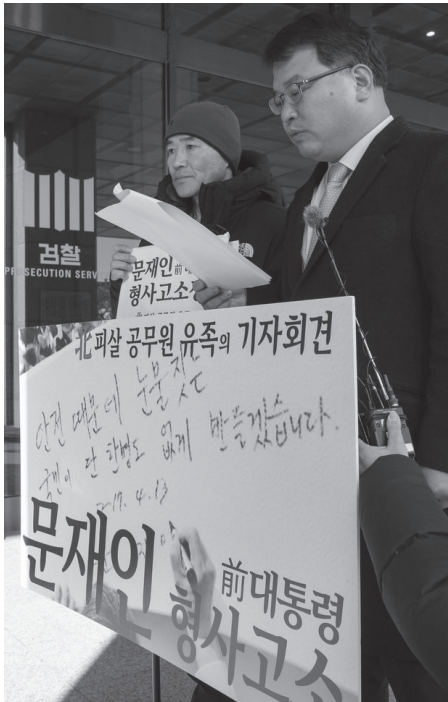


법무매거진



‘월북’ 판단이 통치행위?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前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과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기소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본인이 최종승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도를 넘지 않기 바란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정부가 월북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월북 추정’ 판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SI(특수정보)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두 번 이상 등장하고, 故 이대준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등의 정보를 종합해 내린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해경과 국방부의 입장이 바뀌면서 정부가 판단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주장들에 따르면 ‘월북’ 판단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종합해 내릴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이자 재량영역으로 생각될 수

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월북’ 판단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작용을 일컫는 ‘통치행위’여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월북’ 판단의 법적 성격,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고려할 때 월북 판단이 재량영역이라는 주장들은 본질을 호도한다는 지적이 상당합니다. 이대준씨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는 ‘순직공무원’을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 소득액의 24배의 순직보상금 및 사망 당시 월소득액의 38%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면 45배의 순직보상금, 월 소득액의 43%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 권리 침해하는 ‘월북’ 판단, 정책적 영역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월북’ 판단을 내리게 되면 유족은 연금 및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 제4조 제2항은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정부가 이씨가 ‘월북’했다고 보면 공무상 재해로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더 두텁게 보호되는 순직 내지 위험순직

에서는 당연히 배제됩니다.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 2020년 이씨 아들(당시 19세)은 아버지의 ‘월북’ 낙인 때문에 육군사관학교 지원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월북’ 판단은 이씨 유족의 명예감정을 훼손할 뿐 아니라 연금수급권, 상급학교 진학 등에도 현실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침익적(侵益的) 처분입니다.

이처럼 당사자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월북’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유족이 “월북이 아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유족이 연금을 청구하면 지급 거절 사유로서 ‘월북’에 해당함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월북을 이유로 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내면 유족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정부는 이씨가 월북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부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정부가 패소하게 됩니다.

한 현직 판사는 “월북 판단이 유족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침익적(侵益的)처분이어서 월북 해당 여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양쪽의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월북 요건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없이 월북을 전제로 한 행정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쪽 가능성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월북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또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유족이나 숨진 이대준씨의 법익에 직접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20년 9~10월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허위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배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 내용이 맞다면 이는 단순한 '월북' 판단을 넘어선 조작으로서 통치행위로도 볼 수 없습니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언론 기고문에서 '통치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는지 여부'라며 "이러한 조작이 통치행위로서 고도의 정치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 수사도 이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서해 피격사건을 제주 4·3사건 등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과 비교했습니다. 그는 "권위주의 정권 시대를 반성한다면 저희가 생명을 못 지킨 국민을 명확한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월북이라고)하는 것이 유족,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그레이존(gray zone) 영역은 그레이존인 채로 두어야 하고, 이를 '까맣다'고 덮어씌우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사실 유포이자 누군가의 법익 침해를 가져오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조선일보)